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15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3
2. 관계기관 의견	12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23인

(2) 제 안 일 : 2025. 2. 20.

(3) 회 부 일 : 2025. 2.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 다수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배우자 살해의 경우 가해자는 현행법 제1004조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이 되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음.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가 살해한 배우자 재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였거나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상속결격이 된 경우,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한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i)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ii)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9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생략) <u><신설></u>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u> 1. <u>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u> 2. <u>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u>

나. 현행법상 친권제한제도

(1) 친권의 상실 등

가) 「민법」에 따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현행 「민법」 제924조¹⁾에서는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시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되(제2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1)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나) 특별법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제도

「민법」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에서도 친권상실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²⁾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음, 「아동복지법」 제18조³⁾에서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3)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로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4)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학대 범죄 중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등의 죄를 범하면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즉 아동학대중상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는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등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친권상실 또는 친권 일시정지 선고의 효과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을 선고한 심판이 확정되면 당해 친권자의 친권은 소멸하게 되는바, 친권은 부모의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에 대하여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의미⁵⁾하기 때문에 친권 상실 선고가 있는 경우 그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 등이 모두 소멸되고,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한 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친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2)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현행 「민법」 제924조의2⁶⁾에서는 가정법원이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5)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제도는 신상에 관한 결정 중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등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친권 전부를 상실시킬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재산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본조가 아닌 「민법」 제925조가 적용됨.

(3)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현행 「민법」 제925조⁷⁾에서는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심판의 확정에 의해서 친권자는 법률 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게 되는바,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친권자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할 의무와 권리는 그대로 유지함.

7)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친권의 보호·교양에 관한 부분과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 중 후자의 제한이 더 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규정으로, 보호·교양에 관한 친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만 친권을 상실시킴으로써 친권자와 자녀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짐⁸⁾.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나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상속결격⁹⁾인 친권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 등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자녀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

8) 민유숙, 『주석 민법(친족 2)』, 2020.7. 494-495면.

9)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현행 「민법」 제925조¹⁰⁾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위태롭게 만든 사실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키고, 보호·교양에 관한 친권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임.

그런데 개정안에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i)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ii)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행 「민법」 제925조에서 규정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사유인 재산관리능력의 부족 등과는 그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친권의 내용 중 보호·교양에 관한 친권을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 사항은 없는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에는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 재산관리권에 대한 상실 선고제도 외에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및 재

10)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 등을 모두 상실시키는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 선고제도도 존재하는 상황으로,

개정안에서 친권자의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i)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또는 ii)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사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할 여지¹¹⁾도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에 선택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법원은 부가 자녀들 앞에서 모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경우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서울가정법원 2002느합92)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은 친권자가 다른 친권자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및 상해치사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리권·재산관리권에 대한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상속결격인 친권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상속재산을 둘러싼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개정 사항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배우자 살해 등의 행위를 한 친권자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친권의 전부상실 또는 일시정지가 아닌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상실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